제99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기준 마련(신설) ○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*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, 별표6 개정 ▶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	1.비중요
2	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추가(강화) ○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대상 추가 –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미신고 식물종자를 판매뿐 아니라 생산 · 수입 · 소지 · 유통 · 보관하는 행위도 허가를 취소 · 정지하도록 대상 재정비 * (현행) 생산·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→ (개정) 생산·수입·소지·유통·보관·판매한 경우 ▶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6조	1.비중요
3	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암컷대게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(신설) ○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 품목에 암컷 대게를 추가 ▶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 금지(강화) ㅇ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 상품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근에 출시한 정책서민금융상품(불법사금융예방대출(舊 소액생계비대출)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)을 반영함 ▶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1조	1.비중요
5	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제한(강화) ㅇ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인 역량있는 건축사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- (기간 축소) 10년--->5년 - (용도 제한) 당선된 건축물 용도(건축법령 별표 1호)와 동일한 용도에 한정하여 허가권자지정감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 ▶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	1.중요
6	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동차의 운행제한(신설) ㅇ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·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자동차 운행제한 사유로 규정 ▶자동차관리법 제25조 ▶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(신설) ㅇ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대상 및 절차 등 구체화 ▶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7, 제40조의19, 제40조의21 2.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위반 행정처분의 기준(신설) ㅇ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▶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11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3 3.자동차 안전운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(신설) ㅇ 사전 자료제출의무 대상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, 적정성 조사가 가능한 경우 및 시정조치 관련 의무사항 ▶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, 제56조의16, 제56조의17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8	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(신설) ㅇ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본심의 신청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전 사전심의 신청을 의무화 ▶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	
9	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정(신설) ㅇ 유엔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한 엔-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5개 물질 추가 지정 (마약) 엔-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, 엔-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, 에토니타제피프네, 엔-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(향정) 헥사히드로칸나비놀 ㅇ 마약류 대용 약물로 오·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(향정) 에토미데이트, 렘보렉산트 ▶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	1.중요
10	(한강유역환경청)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안 (환경부)	1.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신설(신설) ㅇ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▶(한강유역환경청)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전체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(원자력안전위원회)	1.외국에서 받은 설계승인의 유효기간 제한(5년)(강화) ㅇ 외국에서 설계승인 받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대해 국내에서 설계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의 유효기간을 적용 ▶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2조 2.설계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한 제한(60일)(강화) ㅇ 운반용기 설계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신청 ▶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2조	1.비중요 2.비중요
12	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(교육부)	1.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입학허가 취소 사유(신설) ㅇ 대학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'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' 추가 ▶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	1.중요